

서울고등법원 2022. 12. 1 선고 2021나2051615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

담당변호사 안형운

피고, 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름길

담당변호사 구영관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시현

변 론 종 결 2022. 10. 27.

판 결 선 고 2022. 12. 1.

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20가합537874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(이하 ‘A’이라 한다)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8.

12. 6. 체결된 매매계약을 140,674,85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40,674,858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이 법원의 심판범위

원고는 제1심에서 A에 대하여는 대위변제금 상당액 등의 지급을 청구하고, 피고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(가액배상)을 청구하였다.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위 청구들을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.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, 제1심 판결 중 A에 대한 부분은 분리·확정되고,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.

2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다만, 그 목차는 이 판결에 맞추어 수정된 것으로 본다).

- ‘피고 B’를 ‘피고’로, ‘피고 A’을 ‘A’으로, ‘피고들’을 ‘피고 B와 A’으로 각 수정한다.
- 제1심 판결서 4면 14행부터 20행까지를 삭제한다.
- 제1심 판결서 6면 10행 중 ‘177분의 122’를 ‘172분의 122’로 수정한다.○ 제1심 판결서 9면 5행 중 ‘이러 사정에’를 ‘이러한 사정에’로 수정한다.

3. 결 론

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설범식, 판사 이준영, 판사 최성보